

##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1. 3. 28	규칙	제1089호
전면개정	2004. 6. 18	규칙	제1167호
개정	2008. 7. 18	규칙	제1240호
개정	2010. 3. 17	규칙	제1274호
일부개정	2011. 2. 8	규칙	제128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제안) 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이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및 업무 등) ① 도시계획시설의 총괄부서는 도시계획과로 하고, 세부 도시계획시설별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업무담당국장이 지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도시계획사업 시행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③ 관리부서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2.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집행 및 유지관리 등
3. 도시계획시설의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업무 등
4. 도시계획시설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등

제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건축의 경우(기존의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예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를 포함한다)·공원·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계획(폐지, 위치 및 선형변경, 길이·면적·폭·시점·종점의 변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되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21층 이상인 경우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 세대수의 합계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유·무 및 지목에 관계없이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여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사업부지 면적이 3,300㎡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사업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단지 안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 「사도법」에 따른 도로로서 그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공원·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포함되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대 용적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최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마.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되어 정비사업 대상으로 판정받은 이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토해양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6-4(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분화된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변경 없이 이미 결정고시된 내용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법률 제6916호 「주택법」 부칙 제9조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계획 및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각각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의 방법을 따른다.

제6조(경사도 조사방법)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3의 방법을 따른다.

제7조(개발행위허가 절차) ①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직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른다.

제8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개발행위 허가 접수 및 행위허가 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한다.

제9조(건축물의 형태) 조례 제38조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외형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의 일부분이 돌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담장·대문 등의 형태·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조례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해촉) ① 조례 제52조제3항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공무원 또는 시의회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해외여행(유학을 포함한다)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출석한 때

제12조(회의개최 및 안건배포) ① 회의는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안건)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제3조에 따른 관리부서에서 미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는 입안권자,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의 결과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출석범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은 할 수 없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실무자 및 보충제안 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5조(제안설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조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이 유인물, 도면, 전자서류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부서) 또는 관련 용역업자가 직접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7조(발언)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횡수에 관계없이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그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위원장의 의사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발언을 중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중에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의 심의·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례 제5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장 이탈 및 퇴장) ① 위원은 회의 중 위원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을 이탈 또는 퇴장할 수 없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이탈 또는 퇴장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사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토의내용 및 결과
4.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사항

제21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2. 도시계획의 재정비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을 포함한다)
4. 위원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내용의 누설금지) ① 위원·관계공무원 및 속기사 등은 회의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해촉된 위원은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위원의위촉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01년 10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 6. 18 규칙 제1167호>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 ③(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의 기점은 2001년 9월 5일 합병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3. 17 규칙 제1274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2. 8 규칙 제128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 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11. 2. 8 규칙 제1289호>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제3조 관련)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시	개인 등
1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도로</li> <li>• 자동차전용도로</li> <li>• 보행자전용도로</li> <li>• 자전거전용도로</li> <li>• 고가도로</li> <li>• 지하도로</li> </ul>	건설방재과	한국도로공사
2	철도	-	교통행정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3	주차장	-	교통시설과	
4	자동차정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터미널</li> <li>• 화물터미널</li> <li>• 공영차고지</li> <li>• 공동차고지</li> </ul>	교통행정과	사업주
5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행정과</li> <li>• 건설방재과</li> </ul>	
6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	경기지방경찰청
7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광장</li> <li>• 일반광장</li> <li>• 경관광장</li> <li>• 지하광장</li> <li>• 건축물부설광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방재과</li> <li>• 녹지공원과</li> <li>• 녹지공원과</li> <li>• 건설방재과, 녹지공원과</li> <li>• 건축과</li> </ul>	사업주
8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공원</li> <li>• 어린이공원</li> <li>• 근린공원</li> <li>• 역사공원</li> <li>• 문화공원</li> <li>• 수변공원</li> <li>• 묘지공원</li> <li>• 체육공원</li> <li>• 도의조례가 정하는 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공원과</li> <li>• 녹지공원과</li> <li>• 녹지공원과</li> <li>• 녹지공원과</li> <li>• 녹지공원과</li> <li>• 녹지공원과</li> <li>• 위생과</li> <li>• 녹지공원과</li> <li>• 녹지공원과</li> </ul>	사업주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시	개인 등
9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충녹지</li> <li>• 경관녹지</li> <li>• 연결녹지</li> </ul>	녹지공원과	사업주
10	유원지	-	녹지공원과	
11	공공공지	-	녹지공원과	
12	유통업무설비	-	지역경제과	사업주
13	수도공급설비	-	수도시설과	수자원공사
14	전기공급설비	-	지역경제과	한국전 력공사
15	가스공급설비	-	지역경제과	한국가스공사
16	열공급설비	-	지역경제과	사업주
17	방송·통신시설	-	-	각 방송사
18	공동구	-	건설방재과	
19	시장	-	지역경제과	사업주
20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지역경제과	대한송유관공사
21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학교</li> <li>• 고등학교</li> <li>• 특수학교</li> <li>• 대학·대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체육과</li> <li>• 교육체육과</li> <li>• 교육체육과</li> <li>-</li> </ul>	안양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학·대학교
22	운동장		교육체육과	
23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 청사</li> <li>• 경찰·파출소</li> <li>• 우체국</li> <li>• 소방파출소</li> <li>• 기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과</li> <li>-</li> <li>-</li> <li>-</li> <li>-</li> </ul>	경기지방경찰청 지식경제부 경기소방재난본부 해당기관
24	문화시설	-	문화예술과	사업주
25	체육시설	-	교육체육과	사업주
26	도서관	-	평생학습원	
27	연구시설	-	-	사업주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련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세분	관리부서	
			시	개인 등
28	사회복지시설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사업주
29	청소년수련시설	-	교육체육과 평생교육과	
30	하천	-	환경시설과	
31	유수지	-	건설방재과	
32	화장시설	-	위생과	
33	공동묘지	-	위생과	
34	장례식장	-	위생과	
35	도축장	-	위생과	사업주
36	종합의료시설	-	보건소	사업주
37	하수도	-	하수과	
38	폐기물처리시설		청소행정과	사업주
39	수질오염방지시설	-	하수과 환경보전과	
40	폐차장	-	교통행정과	
41	기타시설	-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이 지정	

[별표 2]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5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조사한다.

(1) 조사야장 양식

흉고직경	총계	수종○○○		수종○○○		비고
		측정본수	계	측정본수	계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 ① 흉고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 ② 수종이 2개 수종 이상일 때에는 예시와 같이 수종별로 구분한다.
- ③ 측정본수는 정(正)자로 표시한후 합계를 계산한다.

(4) 흉고직경 측정

- ① 흉고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윗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 ③ 흉고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분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흉고점보다 상부에 분지되어 있으면 1분으로 간주한다.

- ④ 흉고점에 혹 또는 웅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흉고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 (5) 산출방법
-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흉고직경을 구한다.
  - ③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흉고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 입목 본수를 m<sup>2</sup>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m<sup>2</sup>) x 본/m<sup>2</sup>
  - ⑤ 입목(본수)도(%) =  $\frac{\text{대상지현재생육본수}}{\text{대상지정상입목본수}} \times 100$

3. 입목본수 기준표

(예시)

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흉고직경 (평균흉고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cm 3미만 (2)	본 3,000	cm 15이상 17미만 (16)	본 820	cm 29이상 31미만 (30)	본 390
3이상 5미만 (4)	2,350	17이상 19미만 (18)	730	31이상 33미만 (32)	360
5이상 7미만 (6)	2,040	19이상 21미만 (20)	630	33이상 35미만 (34)	330
7이상 9미만 (8)	1,740	21이상 23미만 (22)	570	35이상 37미만 (36)	300
9이상 11미만 (10)	1,400	23이상 25미만 (24)	510	37이상 39미만 (38)	280
11이상 13미만 (12)	1,150	25이상 27미만 (26)	470	39이상 41미만 (40)	260
13이상 15미만 (14)	980	27이상 29미만 (28)	430	41이상 (42)	240

가. 매목조사야장

조사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수종 \ 평균 흉고직경		직경 (cm)						
		총계	8cm	10cm	12cm	14cm	16cm	18cm
잣나무	본수	57	25	21	10	1		
	직경소계	544	200	210	120	14		
단풍나무	본수	12			5	5	1	1
	직경소계	164			60	70	16	18
총계	본수	69	25	21	15	6	1	1
	직경소계	708	200	210	180	84	16	18

나. 입목본수도 산출

흉고직경 (단위:cm)	총계	잣 나 무		단 풍 나 무		비고
		본수	계	본수		
7이상9미만	25	正正正正正	25			
9이상11미만	21	正正正正一	21			
11이상13미만	15	正正	10	正	5	
13이상15미만	6	一	1	正	5	
15이상17미만	1			一	1	
17이상19미만	1			一	1	
계	69		57		12	

- 대상지 면적: 1000m<sup>2</sup>
- 평균 흉고직경: 708cm ÷ 69본 = 10.3cm ≒ 10cm
- 10cm, 1ha당 정상 입목본수: 1,400본 (m<sup>2</sup>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1,000m<sup>2</sup> x 0.14/m<sup>2</sup> = 140본
- 입목본수도: (69본 ÷ 140본) x 100 = 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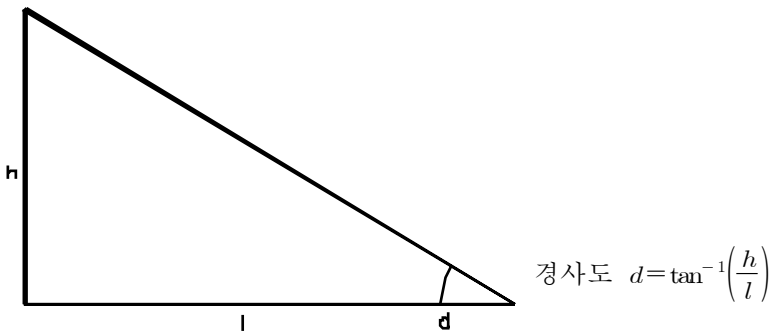
[별표 3]

경사도 조사방법(제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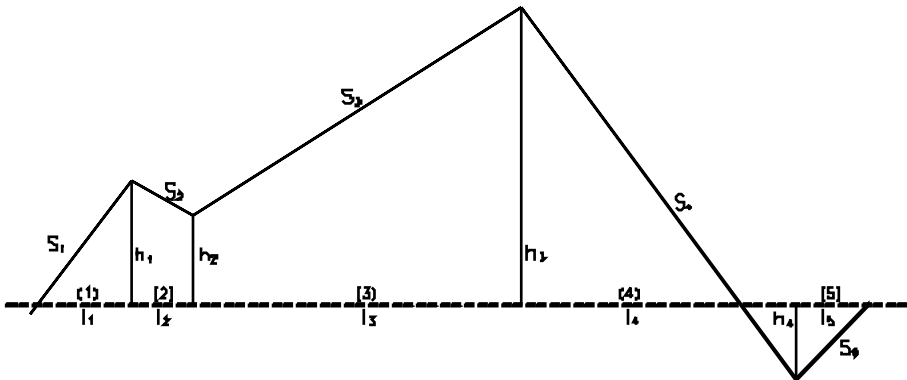
1. 다음 예시된 경사도 측정방법의 적용이 적합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도 측정방법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 한다.



구간	평면거리	고저차	사면거리	구간별경사도	경사도가중치
(1)	$l_1$	$h_1$	$S_1$	$d_1 = \tan^{-1}\left(\frac{h_1}{l_1}\right)$	
(2)	$l_2$	$h_1 - h_2$	$S_2$	$d_2 = \tan^{-1}\left(\frac{h_1 - h_2}{l_2}\right)$	
(3)	$l_3$	$h_2 - h_3$	$S_3$	$d_3 = \tan^{-1}\left(\frac{h_2 - h_3}{l_3}\right)$	
(4)	$l_4$	$h_3 - h_4$	$S_4$	$d_4 = \tan^{-1}\left(\frac{h_3 - h_4}{l_4}\right)$	
(5)	$l_5$	$h_4$	$S_5$	$d_5 = \tan^{-1}\left(\frac{h_4}{l_5}\right)$	

전체평균 경사도 
$$d = \frac{d_1 l_1 + d_2 l_2 + d_3 l_3 + d_4 l_4 + d_5 l_5}{l_1 + l_2 + l_3 + l_4 + l_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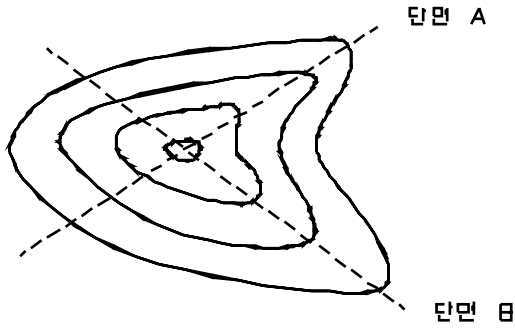
$$= \frac{\sum d_i l_i}{\sum l_i}$$

di: i 구간 경사도

li: i 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따라 각 단면별, 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A단면 경사도

$$d_A = \frac{\sum d_{Ai} S_{Ai}}{\sum S_{Ai}}$$

B단면 경사도

$$d_B = \frac{\sum d_{Bi} S_{Bi}}{\sum S_{Bi}}$$

전체평균 경사도  $d = \frac{\sum d_{Ai} l_{Ai} + \sum d_{Bi} l_{Bi}}{\sum l_{Ai} + \sum l_{Bi}}$

dAi: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dBi: B단면의 i구간 경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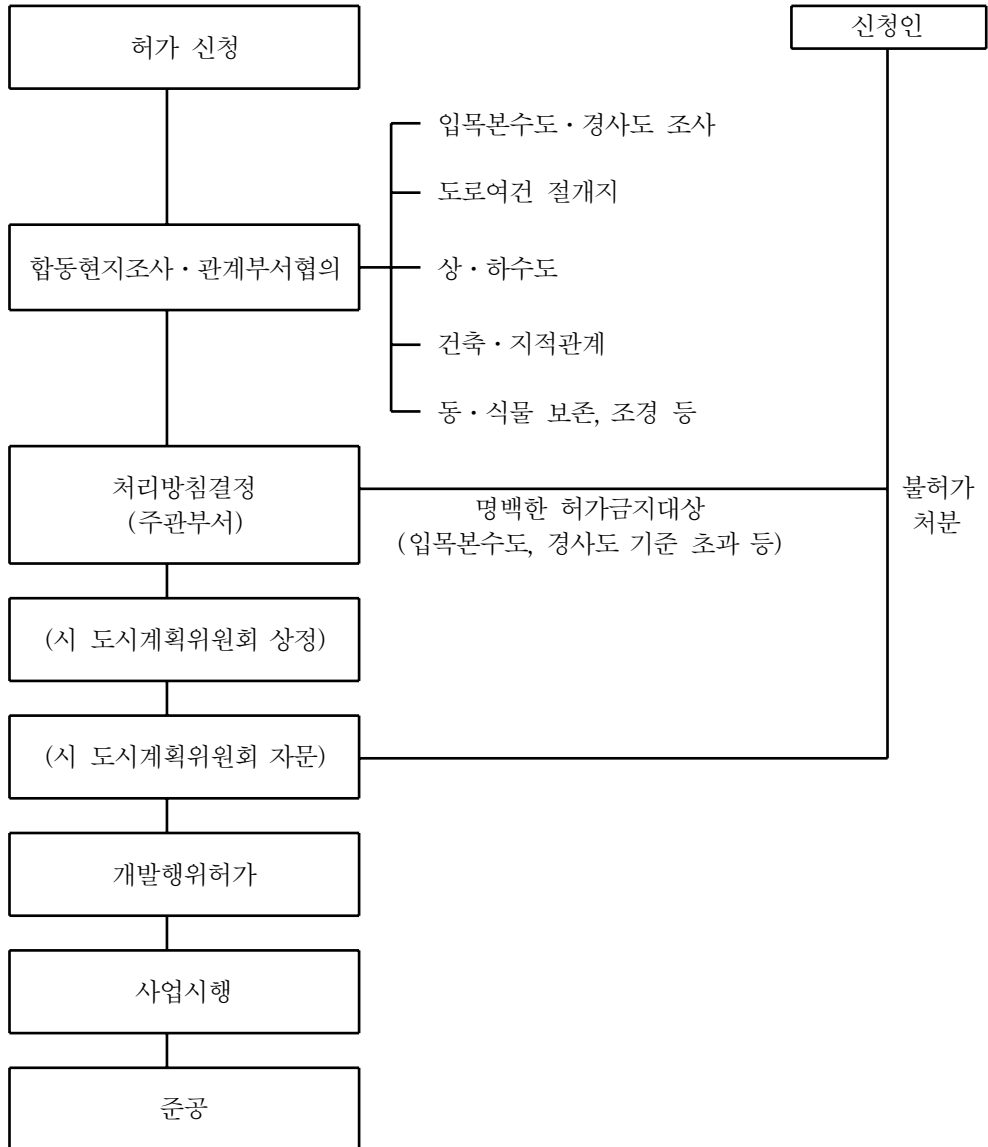
lAi: A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lBi: B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별표 4]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제7조제1항 관련)



\* ( )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임.



(뒷쪽)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관리계획도서(해당지역 지적도축척 및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 계획도 및 계획조서)</li> <li>2. 계획설명서 (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환경성 검토결과·경관계획 등 포함)</li> <li>3. 개발 계획안</li> </ol>		
<p>이 주민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p>		
제안자	안양시	협의기관(부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제안서 작성</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접수</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검토·조사</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도시계획 (또는 공동) 위원회 자문</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입안여부 결정</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최종결재</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관련기관·부서 협의</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비용부담 협의 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제안에 대한 통지</div>	←	
<p>〈참고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제안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li> <li>2.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제안자와 협의, 도시계획(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6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합니다.</li> <li>3. 제안에 대한 통지는 도시관리계획 처리절차의 완료가 아니고 주민제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만을 알려드리는 것이며, 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청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절차(신문 공고, 위원회 심의 등)가 별도로 진행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li> </ol>		





[별지 제4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접수 및 허가 대장

(단위: m<sup>2</sup>)

순번	접수 일자	허가신청내용							처리 일자	처리결과				비고
		신청인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지역	기 타		보완	허가	불허가	사유	

[별지 제5호서식]

## 서약서

본인은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으로 재임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또는 주소: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 양 시 장 귀하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위촉장

성명: ○ ○ ○

귀하를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장 ○ ○ ○